

2023. 9. 7.(목) 제 41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**출**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8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8월 30일

3. 제안이유

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용어의 정의규정 등 일부 조문을 법제처 입안 기준 등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성격에 맞게 목적규정에서 불필요한 인용법령 삭제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규정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(안 제2조)
- 다.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요건 변경(안 제5조)
- 라. 전문교육기관의 명칭과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수정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출배경

○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이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바 해당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용어의 정의규정 등 일부 조문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1조는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을 인용 하고 있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입안기준에 따르면, 법령에 있는 용어정의를 가져와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, 법령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여 표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
- 안 제5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도내 출연・연구기관만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정요건보다 범위를 한정하는 등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해당 조문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
- 안 제10조는 전문교육기관의 명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문맥 등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
-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조항으로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·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바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○ 이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한 규정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함과 동시에,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정의, 맞춤법, 문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 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